

예 산 총 칙

201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0,383,734	8,411,512
일반회계	215,394,474	6,461,834
특별회계	64,989,260	1,949,678
공기업특별회계	7,274,928	218,248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274,928	218,248
기타특별회계	57,714,332	1,731,4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273,965	278,21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1,921	15,958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6,561	27,49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8,270,472	548,11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0,970,069	329,1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161,118	154,834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141,585	64,24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944,383	298,331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384,237	11,527
기반시설특별회계	120,021	3,6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17,44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